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51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진선미·김한규·강유정

강훈식 • 박정현 • 모경종

김영환 • 박민규 • 백승아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통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요구하지도 않았음. 오히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가로막았음.

이에, 「계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 로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제4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그 효력이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제4
	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계엄 선포는 그 효력이 없
	<u>다.</u>